

의안번호 제76호

#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윌일	2018. 8. 28.

#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76호

제출연월일: 2018. 8. 28. 제 출 자: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의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수립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 주기(5년)를 규정하여 변동사항 반영 및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세부적인 정의 정립(제2조제8호)
- 나.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 주기(5년) 추가(제7조제2항)
- 다.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 보완(제8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기타사항

(1)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8. 05. 15. ~ 2018. 06. 08.(24일)

나. 예고결과 :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물관리정책과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10호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간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m 이내일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인 폐가와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지형도면 변경고시 이전 주택증감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지형도면 변경고시전까지는 기존의 지형도를 따른다.

제8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등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환 경	형 과	장	०]	한	철
안	수계	관 리 팀	장	홍	성	문
자	담	당	자	차 (740	용 6-55!	주 53)

## [별표 1]

# <u>가 축 사 육 제 한 구 역 (</u>제7조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비고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 6조) 및 그 인접지역	<ul> <li>○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자연취락지구</li> <li>○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이내의 지역</li> <li>○ 집단주거지역(80세대이상 공동주택) 부지(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500미터이내 지역</li> </ul>	
도시지역 및 그 인접지역 외 지역	<ul> <li>○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li> <li>○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li> </ul>	
	, 닭, 오리, 메추리 : 2,000m 이내 , 양, 염소, 사슴, 말 : 500m 이내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10가구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간 거 리는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m 이 내일 경우로 한다.	8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의 지정) ① (생 략)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생 략)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1. ~ 7. (생략)

〈신 설〉

1. ~ 7. (현행과 같음)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 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등

###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제7조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비고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 6조) 및 그 인접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자연취락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이내의 지역 ○ 집단주거지역(80세대이상 공동주택) 부지(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500미터이내지역		
<u>도시지역 외</u> <u>지역</u>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 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 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 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 에 따라 신고 · 허가받은 가 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 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 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 내에서 가능하다.		
<ul><li>※ 제한거리</li><li>-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2,000미터 이내</li></ul>			

- 소, 젖소, 양, 염소, 사슴, 말 : 500미터 이내

####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제7조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비고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 6조) 및 그 인접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자연취락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이내의 지역 ○ 집단주거지역(80세대이상 공동주택) 부지(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500미터이내지역	
도시지역 및 그 인접지역 외 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 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 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 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 에 따라 신고 · 허가받은 가 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 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 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 내에서 가능하다.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미터 이내

- 소, 젖소, 양, 염소, 사슴, 말: 500미터 이내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O 해당없음

- 2. 비용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환경과장 이 한 철

## 참고 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수변구역
-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참고 2 충청남도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시군	주거밀집지역 조사주기	주거밀집지역 정의
천안	-	- 10호 이상 주택(폐가 제외) -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 거리는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50m - 폐가라 함은 빈집 중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주택
공주	5년	<ul> <li>자연마을형태의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50m)</li> <li>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li> <li>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li> <li>민박, 팬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 가구 기준</li> </ul>
보령	-	-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구수)을 기준, 5가구 이상으로 외벽과 외벽 50m 연접
아산	5년	-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50m 연접
서산	-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 - 민박, 팬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 가구 기준
논산	-	-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형태의 10가구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 이경우 주택간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계룡	3년	-
당진		-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형태의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100이내, 이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제외)
금산	-	<ul> <li>가구의 최소단위은 5가구 이상, 가구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40m</li> <li>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li> <li>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li> <li>민박, 팬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 가구 기준</li> </ul>
부여	-	- 주택 5가구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주택간 거리가 반경 200m 이내의 지역에 주택 5가구 이상인 자연마을 - 주택증감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지형도면 변경고시전까지는 기존의 지형도를 따른다 -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천	-	<ul> <li>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물제외)과 주택(외벽기준) 사이 거리가 50m이내인 가구수의 합이 5호 이상인 지역</li> <li>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li> <li>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li> <li>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i> </ul>
청양	-	-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발생 마을 중 20가구 이상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 주택간 부지경계선 거리가 200m 이내 -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홍성	-	-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12호 이상 모여있는 지역으로 주택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곽과 외곽(건물 외벽 또는 외곽 경계선)이 상호 100m 이내
예산	-	-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5호 이상 모여있는 지역으로 주택간의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한 주택에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 -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태안	-	<ul> <li>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이 일정 구역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각 주택을 중심(본채 중앙)으로 200m 이내에 5호 이상 위치하는 지역</li> <li>주택은 상시 실거주자가 있는 가옥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여러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li> <li>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빈집과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산정하지 않는다</li> <li>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i> </ul>